

#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의 사회후생효과 분석\*

## - 가구유형 및 소득계층별 분석을 중심으로 -

### An Analysis for the Effects of Income Deduction for Pension Contribution on Social Welfare

강 성 호\*\*

Kang Sung-Ho

공적연금 및 사적(개인) 연금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가구유형과 소득계층 모두에서 가치분소득 증가를 초래(면세효과 높음)한 반면, 형평성 측면(지니계수 분석)에서는 미세하지만 역진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두 변수간의 관계를 고려한 사회후생함수( $SW = \mu^\beta (1-G)$ )를 활용하여 연금보험료 공제전후의 사회후생수준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beta$ 값을 높게 가정할수록( $\beta_{값} \rightarrow 1$ ) 연금보험료 공제에 따른 사회후생수준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beta$ 값을 1/2로 분석한 결과, 모든 집단에서 미약하게나마 사회후생수준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는 소득수준 개선과 형평성(지니계수) 간 상충관계를 유발시키고 이로 인하여 전체 사회후생수준은 1% 미만에서 개선효과가 나타났다. 한편, 가구유형별로는 맞벌이 가구에 비해 홑벌이 가구가, 소득계층별로는 고소득층일수록 후생개선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사회후생개선 수혜를 얻게 된다는 측면에서 소득수준별로 공제수준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국문 색인어: 사회후생함수, 소득공제, 지니계수

학술진흥재단 분류 연구분야 코드: B030500, B030503

\* 본 연구는 소속기관의 공식의견이 아니며, 저자의 개인의견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본 연구 수행시 자료처리에 도움을 준 한국조세연구원 정일영 연구원과 2008년 경제학공동학술대회에서 좋은 논평을 해주신 성신여대 강석훈 교수님, 그리고 본 논문을 꼼꼼히 검토해 주신 익명의 두 검토자 선생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powerksh0515@hanmail.net)

논문 투고일: 2009. 06. 30, 논문 최종 수정일: 2009. 07. 22, 논문 게재 확정일: 2009. 07. 24

# I. 서론

## 1. 연구배경 및 연구내용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공적연금(1층), 퇴직(연)금(2층), 개인연금(3층) 등 3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형식적으로는 공·사적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완비되어 있다. 공적연금에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이 있으며, 사적연금에는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연)금과 순수한 사적 노후소득수단으로서 개인연금이 존재한다. 따라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는 다층소득 보장체계(multi-pillar income support system) 구축을 위한 기반은 이미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특수직역연금을 제외하고는 아직 미성숙단계에 있기 때문에 제도의 포괄성, 향후 수급권 획득 및 급여수준 측면에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은 1999년 4월부터 전국민연금제도로 실시되어 왔지만,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와 체납자가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등 연금사각지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한편,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은 2005년 말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가입률이 2007년 말 현재 적용대상 사업장(5인 이상, '05년 501천개소)의 약 6.2% 정도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07). 또한 개인연금<sup>1)</sup>은 1994년에 도입되어 약 15년이 경과하였지만, 가입률은 2006년 현재 14.8%(가구 기준, 노동패널 9차자료 분석) 수준이며, 유지율은 이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분석

1) 개인연금 적립현황과 관련한 최근 자료는 이순재·김현수(2009)를, 개인연금 가입결정 요인에 관한 내용은 전승훈·임병인·강성호(2006)을, 개인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효과분석에 대해서는 정요섭(2006)을 참고하기 바란다.

되고 있다<sup>2)</sup>.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볼 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형식적으로 체계화되었을 뿐 내실화를 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듯 연금제도가 갖는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없이 왜곡된 시각으로 제도를 바라보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금제도가 가진 의미를 하나하나 분석해 볼 필요가 있으며, 그 중 한 가지가 본 연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금과세체계 대한 사회적 후생수준 분석이라고 하겠다.

2000년 세제 개편에 따라 우리나라의 연금과세 체계는 과거 납부시점에서 보험료에 대한 과세가 소득공제(비과세)로 전환되었고, 급여시점에서 연금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가입자의 경제적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금과세<sup>3)</sup> 체계의 경제적 효과가 주요한 연구목표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연금 과세체계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지 못하였다. 특히 실증분석을 통한 연구가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2) 류건식(2004)에 의하면, 개인연금 가입률을 전체 취업자 대비 개인연금 총 계약건수로 산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개인연금 가입률은 1994년 20.6%에서 1996년 24.9%를 정점으로 2001년에 17.5%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하지만 이 가입률은 한사람이 여러 계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개인연금 가입률과는 차이가 있다. 김원섭·강성호(2008)는 한국노동패널조사를 바탕으로 가입률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개인연금 가입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현재 전체 가구 중 14.8%만이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이들은 개인연금 가입유지율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는데, 2000년 가입자를 기준으로 2차년까지 유지하는 가구의 비율은 69.0%로 나타났고, 3년차까지 유지하는 가구는 42.8%로 나타났다. 특히, 2000년에 가입하여 2006년까지 비교적 장기간인 6년 차까지 개인연금 가입을 유지하는 비율은 7.5%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개인연금 수급조건인 10년 동안의 가입을 전제로 한다면 향후 가입자 중 상당히 적은 수가 개인연금을 수급할 것임을 암시한다.
- 3) 본 연구에서 논하고 있는 연금과세는 급여시 발생하는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납부시점에서의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효과를 의미한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그만큼 면세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연금과세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연금과세 적용시점의 변화는 정부의 조세수입 측면뿐만 아니라 개인의 가처분소득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 및 개인의 경제행위 결정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특히, 2000년 세법개정이후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에 대한 과세시점이 보험료 납부시점에서 급여시점으로 바뀐에 따라 납부시점에서 연금제도 가입과 미가입에 따른 소득공제의 경제적 효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연금관련 과세는 시점에 따라 보험료 납입시, 투자수익 발생시, 연금 급여시 등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소득으로 실현되기 이전에 과세하기 어려우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과세이연을 통해 급여시점에서 과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연금과세효과는 납부시점에서의 소득공제효과와 급여시점에서의 연금소득 과세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납부시점에서의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다루는 연금과세 효과는 보험료 납부시 소득공제에 따른 경제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므로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밝혀둔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에 이어 기존의 연구문헌을 살펴보고 본 연구의 차별성에 대해 서술한다. 제2장에서는 현행 연금과세체계의 제도적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분석모형 설정과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요약 및 결론을 제시한다.

## 2. 기존연구와 차별성

연금 과세체계에 관한 연구 중 정운오·박찬웅(2001)은 2000년 연금과세 개편 전후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을 수행한 바 있다. 이들의 결과에 따르면 세율의 변화에 따라 연금과세체계 개편 전후의 경제적 효과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세율이 불변하는 경우 공적연금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적다면 개정 후의 제도가 가입자에게 유리하고, 세율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연금 수령액이 매우 많지 않는 한 개정 후의 제도가 여전히 유리하다고 분석하였다. 반면, 세율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액이 매우 적은 경우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개정 후의 제도가 가입자에게

불리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한편, 개인연금의 경우, 세율이 불변하고 연금불입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 연금수령액이 상대적으로 적다면 개정 후의 제도가 가입자들에게 유리하나, 연금불입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에는 개정 후의 제도가 연금가입자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세율이 변동하는 경우, 개인연금 불입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세율이 하락하면 개정 후의 제도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지만 세율이 상승하면 연금수령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 후의 제도가 연금가입자에게 불리하다고 분석하였다. 이들의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현재소득이 낮아 저세율이 적용되는 가입자가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서 소득이 높아져 고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개정 과세제도가 불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들의 연구는 개정 전후의 공·사적 연금제도에 대한 과세의 경제적 효과를 각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구체적인 특성, 생애기간동안의 부담과 급여를 고려한 분석이 아니라 보험료 1단위 부담에 대한 급부 형태로 경제적 효과를 비교하고, 사적연금 방식으로 공적연금제도를 비교한다는 측면에서 제도가 가진 특성을 정확히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전영준·한도숙(2000)은 연금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개인연금의 경우와 연금관련 조세정책 개편의 효과로 구분하여 실증분석하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개인연금저축 도입을 민간저축 증가로 보고 있으나 여기에 허용된 조세지원책으로 인해 민간저축 수준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이것은 새로운 저축 수단 제공에 따른 효과이며 조세지원의 실효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즉, 개인연금에 대한 조세지원이 민간의 순저축을 증가시키기 보다 자산 간의 대체(일반저축수단에서 개인연금으로의 자금이동)만 가져와서 노후소득준비를 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조세수입만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연금보험료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허용과 연금급여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연금과세는 경제주체들의 후생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연금과세가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부과되지 않고 은퇴 후 노년기의 소비시점에서 부과된다. 따라서 연금과세는 비교적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왜곡 효과가 적게 되고 이에 따라 후생수준 향상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요섭(2003)은 개인연금제도의 세제 변화에 따른 가입자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분석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보험료 납입기간이 길수록 금리 차의 효과가 구연금에 유리하게 작용하고<sup>4)</sup>, 보험료 불입시와 연금수급시의 한계 세율 차이가 클수록(불입시보다 연금수급시에 한 단계 이상(약 1.5%)의 세율이 낮아질수록) 신연금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분석한다. 따라서 저금리추세로 진입하고 있는 현상을 고려할 때 가입자에게 있어 구연금제도가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본 연구가 기존 연구와 비교되는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공·사적 연금제도의 구체적인 특성을 고려한 경제적 효과분석이 없었다는 점, 둘째, 기존연구들의 대부분은 2000년 소득세법 개정 전후의 연금과세효과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개정 전후의 개인소득 증감에 관심을 보였을 뿐, 본 연구에서 논하고 있는 사회후생수준 개선 정도에 대해 가구유형 및 소득계층별 실증분석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 셋째, 그 동안의 분석은 연금급여시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보험료 소득공제에 따른 과세절감 효과에 대해서는 크게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 Ⅱ. 공·사적 연금제도에서의 과세체계

### 1. 공·사 연금의 제도내용 및 특성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을 살펴보면, 보험료를 측면에서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고용주, 근로자가 각각 4.5%(지역가입자는 2005년 7월부터 9% 보험료를 적용)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특수직역연금은 각각 8.5%로써 부담 비율이 훨씬 높고 급여액도 국민연금에 비해 많다. 40년간 국민연금을 가입한 사람

4) 납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수익이 증가하므로 납부시 과세하고 급여시 과세하지 않는 과거의 방식(TEE)이 유리하게 되는 것이다.

의 평균 소득대체율은 60~40<sup>5)</sup>%이나 공무원의 평균 소득대체율은 최고가입기간이 33년임에도 불구하고 76%로 훨씬 높다. 또한 지급방식에 있어 국민연금은 일시금이 예외사항이지만, 공무원연금은 연금과 일시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두 연금제도에서는 연금수령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두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10년을 가입해야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으나, 공무원 연금은 20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특징적인 것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제도의 지급개시연령은 2008년 현재 모두 60세이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2013년 이후 매 5년마다 1세씩 증가하여 2033년에 65세로 조정된다. 반면에 공무원연금은 60세 미만이 정년일 경우 60세 미만의 경우도 수급이 가능하다. 최근 공무원연금제도의 개정으로 지급개시 연령이 점차 뒤로 밀리면서 급여액 수준도 축소되는 추세이지만, 공무원연금가입자가 국민연금가입자보다 여전히 급여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5) 2007년 7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기존 평균가입자 소득대체율은 60%(1999~2007)에서 2008년에 50%로 감소하고, 이후 20년 동안 매년 0.5%p씩 감소하여 2028년 이후에는 40%로 줄어든다.

〈표 1〉 한국의 공사적 연금제도 비교

구 분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개인연금	
적용대상	전국민(특수직역가입자 등 일부 제외)	국가 및 지방공무원, 법관, 경찰관, 교육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직업군인	전국민(18세이상)대상 임의가입	
급여종류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퇴직급여, 유족급여, 재해보상급여, 퇴직수당 -요양급여, 부조급여 등	종신연금 혹은 최소5년 확정연금, 일시금	
급여구조 (노령연금)	보험료	표준소득월액의 9%(근로자 4.5%, 사업자 4.5%), 소득상한선 존재	표준보수월액의 17%(본인 8.5%, 국가 8.5%), 소득상한선 없음	월 백만원 범위에서 본인 선택
	급여산식	노령연금: $(1.5 \sim 1.2) \times (A+B) \times (1+0.05n)$ n: 20년 이상 가입연수 A: 전가입자의 연금수급전 3년간 평균소득 B: 본인의 전가입기간 평균소득	· 퇴직연금: $(0.5+0.02n) \times W$ n: 20년 초과재직연수(33년이하) W: 최종 3년 평균보수월액 · 퇴직연금 일시금: 최종보수월액 $\times$ (재직년수 $\times$ 1.5 + 재직년수 $\times$ 5년 초과 재직년수/100)	· 계약사항에 따름
	연금액조정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	·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증액 또는 감액(3년마다조정)	실질가치 보장 없음
	지급개시연령	60세부터 지급 (2033년 이후 65세로 연장)	60세부터 지급(타법에서 60세 미만 정년일 경우 정년에 지급 가능)	계약만기(10년이상 가입, 55세 이상 77세 이하) 이후 연금수령
	지급방식	연금형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가능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가능
	급여수준	소득대체율 40%(2028년 이후, 40년 가입시)	소득대체율 76%(33년 가입시)	확정금리(보험), 실적배당(신탁, 은행)

자료: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참조



한편, 사적연금인 개인연금의 경우는 18세 이상 모든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보험료는 월 백만원 이하(단, 3개월 납의 경우는 300만원 이하)에서 본인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보험료 납입기간은 10년 가입을 기본으로 하고 55세 이후부터 수급할 수 있으나 소득대체율은 그 자신이 불입한 금액의 기금수익률(혹은 계약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공적연금과 같이 확정 급여수준이 아니다. 또한, 연금액이 물가상승률이나 임금상승률에 의해 조정되지 않으므로 실질가치가 보장되지 않으며 지급방식도 연금과 일시금 중에서 선택하여 지급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특성을 정리하면 위 <표 1>과 같다.

## 2. 현행 연금과세 체계와 과세 혜택

2000년 세법개정 이전의 연금관련 과세체계는 제도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일관성이 결여된 과세체계였던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전영준, 2001). 또한, 연금보험료 불입시 소득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연금급여 수급시 과세하지 않는 체계(TEE)는 선진국<sup>6)</sup>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연금소득의 과세방법과 다르고 자본형성에 순기능을 담당하는 소득원인 보험료에 과세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특히, 국민연금가입 중에 기여한 연금보험료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인정함으로써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고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기반확충 및 과세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은 노사정위원회, 학계 및 OECD에서 권고한 사항이기도 하다<sup>7)</sup>. 따라서 2000년 이후 공·사적 연금소득에 대해 납입단계에서의 소득공제(Exempt)와 운용수익 발생단계에서의 과세이연(Exempt)후 최종 수령단계에서만 과세(Taxed)하는 EET형 과세체계를 취하게 되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배경 하에 우리나라 연금소득 과세 개편의 주요한 이유 중 하

6) 다만, 미국과 영국의 경우는 불입단계와 납입단계 모두 과세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전영준·한도숙, 2000).

7)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제9장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나가 된 외국의 연금과세체계를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이후에 현행 연금과세 체계에서의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공·사적 연금소득의 산출 식을 설명하고, 제도적 측면에서 보험료납부에 따른 소득공제 효과를 살펴본 후 제3, 4장에서 이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 가. 외국의 연금과세체계

각 국의 연금과세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공·사적 연금에 구분 없이 납부 시에는 비과세하고 급여 시에 과세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미국과 영국의 경우 개인연금에 대해서는 납부시 비과세, 급여시 과세의 일반적인 원칙을 적용하고 있지만, 오히려 공적연금 보험료에 대해서는 납부 시와 급여 시 모두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다만, 고용주에 대해서는 보험료전액을 손금산입 처리한다. 이러한 이유는 미국의 경우에 연금보험료 자체가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의 성격을 띠고 있어 세금의 성격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우는 공적연금 재정안정화 측면과 사적연금 활성화 측면에서 공적연금에 대해 이중적 과세형태를 취함으로써 일정정도의 재원 충당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캐나다의 경우 기초연금인 OAS와 소득비례연금인 CPP/QPP에 대해 납부시 비과세하고 급여시 과세하는 원칙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피용자에게 납부시 비과세한다는 점에서 영·미 체계와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캐나다의 연금과세체계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우와 유사하고, 또한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하겠다.

〈표 2〉 각 국의 연금과세 현황

구분	공적연금		개인연금	
	납부시	급여시	납부시	급여시
미국 (OASDI)	고용주: 전액손금산입 피용자: 사회보장세로과세(소득공제혜택없음)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과세	소득공제, 비과세	과세
영국 (국민보험)	고용주: 전액손금산입 피용자: 소득과세(소득공제혜택없음)	전액과세	소득공제, 비과세	과세
캐나다	노령보장제도(OAS)	비과세	과세소득에 산입	-
	CPP/QPP	고용주: 전액손금산입 피용자: 전액소득공제		-
일본	소득공제, 비과세	과세	소득공제, 비과세	과세
한국	고용주: 전액손금산입 피용자: 소득공제, 비과세	과세	소득공제, 비과세	과세

자료: 전영준·한도숙(2000); 나성린·문춘걸(2000)을 재구성

### 나. 과세대상 공·사적 연금소득(급여시점 과세)

현행 연금제도에서의 과세는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하고 있으므로 연금과세의 효과는 연금소득 발생여부(급여시점) 및 보험료(납부시점) 납부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적연금제도의 미성숙으로 인해 연금수급 가구가 적고, 연금소득 수준도 매우 낮아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납부시점에서 보험료의 소득공제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급여시점에서의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효과는 아래와 같이 제도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대신한다.

(1) 연금소득 종류 및 범위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은 연간 총연금 수령액(개인연금 포함)에서 연금소득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체적인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공적연금의 경우 지급기관에서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타 연금소득이나 타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신고 하며,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과 같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하게 된다(소득세법 제73조). 퇴직연금·개인연금의 경우 지급기관이 10%세율로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소득세법 제129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참조).

〈표 3〉 연금소득의 범위

구분		연금소득의 범위	적용례
공 적 연 금 소 득	국민 연금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금	2002.1.1이후 불입분을 기초로 지급받 는 것부터 연금소득으로 과세
	공무원 연금등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 는 각종 연금	
사 적 연 금 소 득	퇴직 연금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퇴직자가 지급받는 연금	2005.1.1.이후 최초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것부터 연금소득으로 과세 * 2004.12.31이전 : 퇴직소득과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	2006.1.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부 터 과세(2005.12.31 신설)
	개인 연금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	2001.1.1.이후에 최초로 가입하는 저축 분부터 연금소득으로 과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	
기타 연금		위의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 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자료: 재정경제부, 2007 조세개요

〈표 4〉에서는 현행 연금소득공제 수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연금소득은 총 4개 구간으로 구분되어 각 구간별로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저연금소득 계층에 대해 상대적으로 공제 폭이 크고 연금소득이 증가할수록 각 구간에서의 공제율은 감소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금소득 공제 한도는 9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다(연금수령액이 연간 6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 또한 노후에 연금을 수령할 경우 세제 적격연금에 대한 세율은 5%(주민세포함5.5%, 공적연금은 기본세율)로 저율과세하고 있다.

〈표 4〉 현행 과세제도의 연금소득공제 및 과세비율(과세감소혜택)

연간 총연금액	연금소득공제액(한도 900만원)
연 350만원 까지	전액공제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 초과분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 초과분의 20%
1400만원 초과분	630만원 + 1400만원 초과분의 10%

자료: 1) 재정경제부, 2007 조세개요

2) 소득세법[일부개정 2007.12.31 법률 제8825호]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 (2) 과세대상 공·사적 연금소득 산출

연금과세제도 개편에 따라 개정된 연금과세 체계에서 과세대상 소득은 연금형태나 일시금형태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또한 연금형태의 경우에도 공적연금이나 사적연금이나에 따라 연금소득산출 과정에 차이가 있다.

먼저 공적연금소득 산출식에 대해 살펴보면, 공적연금은 2002.1.1 이후 불입분부터 과세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과세대상 연금소득<sup>8)</sup>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8) 반납금 또는 추납보험료 납부에 따른 “2002년 이후 불입기간”의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반납금을 납부함에 따라 복원되는 가입기간이 200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 한해 “2002년 이후 불입기간”에 포함하며, 추납보험료의 경우에는 신청일자가 200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 한해 “2002년 이후 불입기간”에 포함한다.

$$NPI = TB_{NP} \times CI_{t_0} / CI_t \quad (1)$$

단,  $NPI$ : 국민연금의 과세대상 연금소득,  $TB_{NP}$ : 총 연금수령액,  
 $CI_{t_0}$ : 2002.1.1 이후 불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의 누계액,  
 $CI_t$ : 총 불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 누계액

여기서 총 연금수령액( $TB_{NP}$ )은 국민연금법 제57조 규정에 의해 산정된 노령연금액 중 매월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연금액(가급연금액 포함)이며, 환산소득( $CI$ )이란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매년 표준소득월액을 국민연금법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해 연금수급 전년도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한편,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일시금<sup>9)</sup>으로 지급받게 될 경우<sup>10)</sup>는 연금 자격상실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반환일시금 청구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월수를 근거로 당해 계산기간 중에 적용되었던 1년만기 정기에 금이자율로 산정한 이자(가산이자 포함)를 불입원금과 함께 퇴직소득으로 지급된다(국민연금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될 경우는 퇴직소득 과세 규정<sup>11)</sup>에 따라 적용된다.

$$AI = TC_{t_0} + RI \quad (2)$$

9) 한편, 반납금 또는 추납보험료 납부에 따른 일시금 소득 산정기준을 살펴보면, 반납금(반환일시금 + 반환이자)이 납부된 경우에는 기 반환일시금 지급시 소득세를 징수하였으므로 일시금소득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며, 추납보험료가 납부된 경우에는 신청일자가 200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 한하여 일시금 소득 산정대상에 포함한다.

10)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며, 반환일시금 지급사유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과세대상 반환일시금 지급사유로는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에 달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등이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반환일시금 지급사유로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으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 미상환대여원리금 상당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 반환일시금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미지급급여로 지급받는 경우 등이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를 참고하기 바란다.

단,  $AI$  = 국민연금 일시금,  $TC_{t_0}$  = 2002년 이후 납부한 연금보험료 총액  
 $RI$  = 이자(가산이자 포함)

특수직역연금으로 20년 이상 가입하여 연금형태로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같이 연금소득에 의한 과세대상으로 분류되나 연금소득 산정에 있어서 불입월수를 중심으로 산정된다는 점에서, 환산소득의 누계액으로 산출하고 있는 국민연금 연금소득의 산정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특수직역연금의 경우도 연금수급자격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이때 퇴직소득기준으로 과세되는데 퇴직소득 산정기준은 연금소득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OPI = TB_{OP} \times CC_{t_0} / CC_t \quad (3)$$

단,  $OPI$  = 특수직역연금의 과세대상 연금소득,  $TB_{OP}$  = 총 연금수령액  
 $CC_{t_0}$  = 2002.1.1 이후 기여금 불입월수,  $CC_t$  = 총기여금 불입월수

다음으로 사적연금인 퇴직·개인연금의 과세대상 연금소득에 대해 살펴보면, 수령하는 소득의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세가 달라지는데,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우리나라의 소득분류에 따라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된다. 단 국민연금의 수령액과 합산한 총 연금액이 600만 원 이하일 경우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한다. 근로자 부담금 납입 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소득세를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연금수령 시에는 이를 제하여 과세대상 연금소득을 산출한다.

다만, 가입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일시금)에는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sup>12)</sup>. 이때 일시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되

12) 다만, 가입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산출한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며, 과세대상 일시금은 과세대상 연금소득 산출과 동일하게 근로자 부담금 납입시 과세된 부분을 차감하고 결정된다. 따라서 사적연금인 퇴직·개인연금 일시금 산식은 식 (4)와 일치하며, 다만 연금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차이만 있다.

$$PPI = TB_{pp} \times (1 - C_{tax} / C_{all}) \quad (4)$$

단,  $PPI$  = 퇴직·개인연금의 과세대상 연금소득(혹은 일시금)

$TB_{pp}$  = 총 연금수령액(해지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C_{tax}$  =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누계액

$C_{all}$  = 연금지급개시일 현재 원리금 합계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

#### 다. 비과세 연금보험료 및 혜택(납부시점 비과세: 소득공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납부시점에서 연금보험료에 대한 비과세는 연금가입자에 대한 다른 형태의 과세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공·사적 연금제도가 아직 미성숙단계에 있다는 점에서 연금소득보다는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갖는 세제혜택에 주목하고 있다.

〈표 5〉는 현행 과세체계에서 공·사적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로 인해 발생하는 면세혜택을 보여주고 있다. 사적연금 보험료의 연간 최고공제금액이 300만원이고, 여기에 자신의 과세표준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사적연금 보험료 소득공제로 인한 세금혜택을 산출할 수 있다. 공적연금의 경우는 사적연금에 비해 전액 소득공제처리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표 5〉 현행 과세제도의 연금소득공제 및 과세비율(소득공제혜택)

과세표준	소득세율	주민세율	적용세율	사적연금 최고 공제금액	사적연금 최고 연간세금혜택
1,000만이하	8%	소득세의 10%	8.80%	300만원	264천원
1,000만 ~ 4,000만	17%		18.70%	300만원	561천원
4,000만 ~ 8,000만	26%		28.60%	300만원	858천원
8,000만초초과	35%		38.50%	300만원	1,155천원

현행 세제적격 연금지축은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신규 가입시 전액소득공제(300만원한도)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12월), 종소세정산(5월)후에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세제적격 연금의 요건은 ① 연금으로 수령하여야 하고(일시금 수령은 연금이 아님), ② 55세 이후에 5년이상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하여야 하며(5년이후 일시금 수령가능), ③ 10년이상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상기요건 미달시 비적격 연금으로 구분하여 세법상의 불이익이 따른다. 즉,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해지하면 가입기간 중에 받은 소득공제에 대한 환수와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했을 때의 패널티가 따른다. 연금계약 해지시 22%(주민세포함)의 기타소득세가 과세되며, 연금계약을 5년내 해지시 상기 22%에 2.2%(해지가산세)를 추정하게 된다.

### Ⅲ. 모형설정 및 실증분석

공·사적연금의 연금과세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앞에서 설명한 각 제도의 연금급여산식을 이용한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급여산식에는 가입이력 및 소득(보험료) 수준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연금소득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과거 기여이력과 소득수준(혹은 보험료수준)이 파악되어야 한다. 물론 개인연금의 급여산식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으나 현행 우리나라 공적연금이 DB방식

(Defined Benefit : 확정급여)인데 비해 개인연금은 금융상품으로 인식되고 DB, DC형, 혼합형 등 다양한 형태로 설계될 수 있어, 현실적으로는 가입자마다 다양한 급여산식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특성을 반영하되, 연금과세효과를 납부시점의 소득공제효과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며, 분석집단을 가구유형(홀벌이, 맞벌이), 소득계층별로 구분하여 연금의 과세효과와 후생수준 변화효과를 비교·분석한다. 먼저 활용자료에 대해 살펴보고, 기본가정을 설정한 후 실증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 1. 활용자료 및 기본가정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자료는 한국노동패널자료(KIIPS data) 6~9차 자료이다. 기존의 횡단면 자료들은 가구 중심이고, 개인자료에 대한 충분한 변수가 없어, 본 모형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분석방법을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개인과 가구 변수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패널자료를 이용하였다. 6차부터 사용한 이유는 개인 연금 보험료 납부에 대한 정보가 6차부터 나타나기 때문이다.

주요 분석대상은 가구유형(홀벌이, 맞벌이)별, 소득계층별(5분위)<sup>13)</sup> 집단이다. 동 집단으로 구분한 이유는 맞벌이 가구와 홀벌이 가구의 가구 내 경제상황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이 기존연구에서도 수행되어 왔으나, 대부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sup>14)</sup>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고, 동 연구에서와 같이 연금과세 측면에서는 다룬 적이

13)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10분위법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개인연금 가입과 관련하여 저소득층의 가입률이 낮고, 또한 분위를 세분화하면 개인연금 가입 현황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이 다소 낮아지기 때문에 이를 절충한 5분위로 구분하였다(소득하위 20%단위로 구분, 최하위계층 1분위~최상위계층 5분위).

14) 설광언 외(2006)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관련하여, 맞벌이 부부는 순소득 면에서 홀벌이에 비해 그리 유리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선진국의 경우 같은 가구소득을 벌어들이다라도 맞벌이의 경우가 홀벌이에 비해 유리하도록 고안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부정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일하는 젊은 여성의 결혼가치를 감소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맞벌이나 홀벌이나에 따라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후생수준 또한 변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분석의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또한 소득계층별로 나타나는 효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연금의 소득보장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등) 이를 위해 가구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5분위 소득계층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본 연구의 분석틀과 기본가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직까지 공·사적 연금소득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애기간을 고려한 분석에는 한계가 있고, 또한 연금제도의 미성숙으로 연금소득 발생 가구가 매우 적으므로 급여시기보다는 납부시기를 중심으로 보험료의 소득공제에 따른 과세혜택을 살펴본다. 둘째,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가구중심으로 분석하되, 현행 과세체계가 개인의 경제상황까지 고려하고 있으므로 가구자료와 더불어 개인자료를 활용한다. 셋째,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개인연금 가입자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퇴직연금을 분석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퇴직연금이 2005년말 부터 적용되고 있어, 패널조사에서 이에 대한 변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넷째, 연금과세액 추정은 근로소득세 체계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다섯째, 국민연금보험료 9%(본인부담 4.5%), 특수직역연금보험료 17%(본인부담 8.5%), 건강보험료<sup>15)</sup> 3.63%~4.31%(본인부담 1.8%~2.2%), 고용보험료율은 본인부담 1%를 적용하여 사회보험료 수준을 산출하였다. 사회보험료 수준은 개인별로 조사되어 있지 않아 개인의 세전근로소득에 동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이를 가구단위로 합산하였다. 사회보험의 상한은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내로 하였다. 즉, 국민연금 16.2만원, 특수직역연금은 완전소득비례(상한 없음), 건강보험표준등급 상한(100등급; 4,980만원)을 적용하였다. 여섯째, 연금과세 효과를 산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근로자 연금정산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15) 건강보험료율은 분석대상기간인 2002년(6차)부터 2005년(9차)까지 3.63%, 3.94%, 4.21%, 4.31%이며, 본 연구에서 적용한 보험료는 본인부담분(각 요율의 1/2)을 적용하였다.

〈근로소득자의 항목별 공제액 및 산출액 계산 과정〉

- ① 총급여액(급여+상여) = 연간급여액-(비과세소득)
- ② 근로소득=총급여액(급여+상여) - 근로소득공제
- ③ 과세표준=근로소득-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다자녀추가공제)
  - 공적연금보험료공제
  - 특별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혼인/장례/이사공제)
  - 기타공제(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투자조합출자,신용카드,우리사주조합출연금)
- ④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⑤ 결정세액 = 산출세액-(세액공제 및 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납세조합공제,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세액감면)

여기서, ‘①총급여액’은 KLIPS 조사자료에서 과세전총근로소득으로 하였다. 과세전 총근로소득이 연간급여액에서 비과세근로소득을 뺀 개념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나<sup>16)</sup>, KLIPS 자료의 성격상 가장 가까운 개념으로 판단된다. ‘②근로소득’은 총급여액에서 세법상 근로소득공제분을 감하여 산출하였다. ‘③과세표준’은 근로소득에서 인적공제, 공적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기타공제를 제외한 값으로 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보면 인적공제의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는 KLIPS자료에서 가구 구성원 정보를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공적연금보험료는 KLIPS 개인자료에서 공적연금가입여부를 고려하여 가입하고 있는 자에 대해 총급여액에 법정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특별공제는 가구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만 고려하였다<sup>17)</sup>. 기타공제에는 개인연금 보험료가 포함되는데, 개인연금도 2001년을 전후로 개인연금저축(구개인연금), 연금저축(신개인연금)으로 구분되나, 여기서는 시기구분이 불가하여 개인연금 납부이력이

16) 조사자료의 한계상 비과세소득(중식비 등)에 대한 포함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17) 가구의 주택자금, 기부금, 혼인/장례/이사공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이들 변수의 평균값은 전체기준으로 볼 때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있으면 연금저축(신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렇게 하여 산출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이 결정되고, 여기에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이 적용되면 현행 우리나라 과세체계에서의 세액이 결정된다. 단, 여기서는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반영할 수 없어, '④산출세액'까지만 고려하였다.

KLIPS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세액이 결정되면, 공·사적연금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여부에 따른 연금과세 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 즉, 공적연금(국민, 특수직역) 가입자를 대상으로 현행과 같이 보험료 납부에 따른 과세 수준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 과세수준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공적연금 과세효과를 분석한다. 동일한 논리로 '개인연금 자체'와 '공·사적 연금보험료 전체'에 대한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 2. 분석방법 및 기술통계

### 가.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공·사적 연금 가입가구를 중심으로 가입시와 미가입 가정시 발생하는 연금과세효과와 이러한 연금과세효과가 사회후생수준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세부적인 분석집단으로 가구유형을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로, 소득계층 구분은 5분위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먼저 연금과세효과와 관련하여, 보험료 납부시점에서 연금 보험료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가입자를 중심으로 발생되므로 가입가구와 미가입 가구에 대한 경제상태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연금가입자와 미가입자만을 대상으로 비교한다면, 연금미가입자의 대부분이 연금가입자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아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연금과세 효과에 대해 과소 혹은 과대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순수하게 연금과세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구(가입가구)를 대상으로 연금가입시 과세수준과 미가입을 가정할 경우 발생하는 과세수준 간의 차이를 연금과세 효과로 본다. 또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맞벌이와 홑벌이, 소득수준별로 상이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들 집단에 대한 과세

효과를 비교분석한다. 연금과세효과( $TB$ )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TB = ((Y-C)-Y) \times t = -C \times t \quad (5)$$

단,  $TB$ : 연금과세 효과,  $Y$ : 소득수준  $C$ : 연금보험료  $t$ : 소득세율

식 (5)에 의하면 연금과세효과( $TB$ )는 보험료 공제적용을 받는 소득( $Y-C$ )에서 보험료 공제적용을 받지 못할 때의 소득( $Y$ )을 제하면 보험료 공제액( $-C$ )이 되고 여기에 소득세율( $t$ )을 곱하여 산출( $-C \times t$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효과는 개인의 가처분소득에 영향을 주게 되고 사회 전체의 분배상태도 변화시키게 될 것이므로 사회후생 수준은 변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사회후생함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사회후생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다른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sup>18)</sup>, 여기서는 Sen(1973)의 사회후생함수를 일반화한  $SW = \mu^\beta (1-G)$  모형(Mukhopadhaya, 2001)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Sen(1973)은 “pairwise maxmin”<sup>19)</sup> 후생기준을 이용해 Sheshinski(1972)의 사회후생함수를 일반화하여 가산적으로 분리가능한 사회후생함수가 지니계수에 기초할 수 있음을 보였다(임병인, 1999). 따라서 식 (6)은 효율성과 관련되는 평균소득( $\mu$ )과 공평성과 관련되는 지니계수( $G$ )가 동시에 포함된 축약사회후생함수를 의미하게 된다.

$$SW = \mu(1-G) \quad (6)$$

그러나 Sen(1973)이 도출한 사회후생함수는 불평등과 효율성간에 로그함수 전환 시 1차함수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다소 강한 가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18) 본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강성호·김문길(2006.2)을 참고하기 바란다.

19) “pairwise maxmin” 후생기준은 어떤 두 사람간의 후생이 각자의 세전 소득을 비교하여 소득이 더 낮은 사람의 효용에 의해 결정되고 또한 그런 방법으로 도출된 후생수준을 합산하여 그들이 속한 사회의 총 후생을 결정한다면, 지니계수를 이용한 소득불평등 관련 사회후생함수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Sen(1973)의 사회후생함수를 일반화한 사회후생함수를 도출한 연구가 있는데(Mukhopadhaya, 2001), 이에 의하면 Sen(1973)의 사회후생함수의 평균소득의 일정 값( $\beta$ )만큼 지수승하여 도출하고 있다. 여기서  $\beta$ 값은 0과 1사이에 있는데<sup>20)</sup>, 평균소득에 대해 영향을 주는  $\beta$ 값에 의해 평균소득의 후생가치가 판단되며,  $\beta$ 값이 증가할수록 후생가치는 증가한다. 불평등도 지수는  $\beta$ 값과 무관하므로 전체 사회후생 수준은 평균소득의 일정비율과 불평등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text{일반적 사회후생함수 : } SW = \mu^\beta (1-G), \quad 0 \leq \beta \leq 1 \quad (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화 사회후생함수로 연금과세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beta=0, 1/2, 1$ 의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 나. 기술통계 분석<sup>21)</sup>

<표 6>에서는 가구유형을 가구주의 배우자가 연간 500만원<sup>22)</sup> 이상의 소득을 벌어들일 경우에는 맞벌이로 가정하여,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였다. 이에 의하면, 2006년 9차 조사를 기준으로 홑벌이 가구는 77.0%, 맞벌이 가구는 23.0%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비율은 4개년 모두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도별 변화추이 비교시, 물가 혹은 인금상승률을 고려하여 비교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기술통계를 중심으로 분석하므로 해당 년도의 경상가를 기준으로 그 추이를 제시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  $\beta$ 값이 0과 1사이에 있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pairwise maxmin" 후생기준에 의해 사회후생수준은 소득이 낮은 사람의 효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소득관점에서 사회후생수준은 평균소득 이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사회후생함수에서 평균소득 지수인  $\beta$ 가 0과 1사이에 있게 된다.

21) 가구일반사항에 관한 기술통계량은 부록에서 가구주의 성, 연령, 학력 등을 제시하였다.

22)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에 의하면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홑벌이와 맞벌이 유형을 구분하였다.

〈표 6〉 연도별 가구유형 현황

(단위: 가구, %)

가구유형	6차조사(2003년)		7차조사(2004년)		8차조사(2005년)		9차조사(2006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홀벌이	3,488	(75.9)	3,702	(77.7)	3,764	(77.6)	3,502	(76.4)
맞벌이	1,104	(24.1)	1,060	(22.3)	1,085	(22.4)	1,083	(23.6)
합계	4,592	(100.0)	4,762	(100.0)	4,849	(100.0)	4,585	(100.0)

주: 가구주의 배우자가 연간소득 500만원 이상일 경우 맞벌이 가구로 가정

〈표 7〉에서는 노동패널 6차조사 자료부터 9차 자료를 대상으로 공사적 연금 가입 현황을 모두가입, 공적연금만 가입, 사적연금만 가입, 모두 미가입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에 의하면 전체기준으로 모두 미가입인 경우가 4개년 모두 50%를 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2006년(9차조사) 기준으로 살펴보면, 모두 가입한 경우는 7.3%, 공적연금만 가입한 경우는 34.9%, 사적연금만 가입한 경우는 3.2%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금가입 현상은 4개년 모두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공적연금 가입의 경우는 미세하지만 4개년 동안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7〉 연도별 가구유형별 공사적 연금 가입현황

(단위: 가구, %)

공사적 연금 가입여부		6차조사(2003년)			7차조사(2004년)			8차조사(2005년)			9차조사(2006년)		
		홀벌이 맞벌이 전체			홀벌이 맞벌이 전체			홀벌이 맞벌이 전체			홀벌이 맞벌이 전체		
모두 가입	빈도	181	144	325	171	134	305	184	140	324	181	154	335
	비율	(5.2)	(13.1)	(7.1)	(4.6)	(12.6)	(6.4)	(4.9)	(12.9)	(6.7)	(5.2)	(14.2)	(7.3)
공적연금만 가입	빈도	978	514	1,492	1,060	516	1,576	1,103	542	1,645	1,050	552	1,602
	비율	(28.0)	(46.6)	(32.5)	(28.6)	(48.7)	(33.1)	(29.3)	(50.0)	(33.9)	(30.0)	(50.9)	(34.9)
사적연금만 가입	빈도	161	47	208	184	56	240	139	39	178	118	28	146
	비율	(4.6)	(4.3)	(4.5)	(5.0)	(5.3)	(5.0)	(3.7)	(3.6)	(3.7)	(3.4)	(2.6)	(3.2)
모두 미가입	빈도	2,168	398	2,566	2,288	354	2,642	2,337	364	2,701	2,152	350	2,502
	비율	(62.2)	(36.1)	(55.9)	(61.8)	(33.4)	(55.5)	(62.1)	(33.5)	(55.7)	(61.5)	(32.3)	(54.6)
전체	빈도	3,488	1,103	4,591	3,703	1,060	4,763	3,763	1,085	4,848	3,501	1,084	4,585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가구유형별 공·사적 연금 가입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공·사적연금을 모두 가입한 비율은 모든 분석기간 동안 홀벌이 가구에 비해 맞벌이 가구가 2배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2006년의 경우 홀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공·사연금에 모두 가입한 비율은 각각 5.2%, 14.2%로 나타났으며, 이는 향후 연금수급시점에서 홀벌이 가구의 연금수급권 획득이 맞벌이에 비해 매우 낮은 가능성을 시사한다<sup>23)</sup>.

〈표 8〉에서는 가구유형별 연간총급여액과 공·사적 연금보험료 수준을 연도별로 보여주고 있다. 전체기준으로 연금총급여액 및 공·사적 연금보험료 수준은 모두 미세하게나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구유형별로 보면, 홀벌이 가구 보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서 그 증가추이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사적연금(개인연금) 보험료는 홀벌이 가구의 경우 8차조사에서,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7차조사에서 이전년도 개인연금 보험료 보다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공적연금에 비해 사적연금의 경우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분명한 추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사적연금이 노후소득보장 제도로써 불완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8〉 연도별 가구유형별 총급여 및 공·사적 연금보험료

(단위: 천원, 가구)

가구유형	6차조사(2003년)			7차조사(2004년)			8차조사(2005년)			9차조사(2006년)			
	연간 총급여 액	공적 연금 보험료	사적 연금 보험료	연간 총급여 액	공적 연금 보험료	사적 연금 보험료	연간 총급여 액	공적 연금 보험료	사적 연금 보험료	연간 총급여 액	공적 연금 보험료	사적 연금 보험료	
홀 벌 이	평균	27,022	1,274	184	26,953	1,363	228	27,304	1,448	223	29,339	1,482	223
	빈도	2,803	1,159	341	2,926	1,231	355	2,961	1,287	323	2,805	1,231	300
맞 벌 이	평균	38,731	1,593	215	39,349	1,764	210	40,925	1,826	243	42,546	1,860	279
	빈도	1,104	658	192	1,060	650	192	1,085	682	179	1,083	705	182
전 체	평균	30,332	1,390	195	30,249	1,501	221	30,956	1,579	230	33,018	1,620	244
	빈도	3,907	1,817	533	3,986	1,881	546	4,046	1,969	502	3,888	1,936	482

23) 절대적 수치에 있어서는 맞벌이 보다 홀벌이 유형이 3배 이상이지만 각 유형별로 비교한 결과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9〉에서는 소득계층별로 구분하여 공·사적연금 가입유형별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KLIPS 6차~9차자료의 결과가 거의 유사하여 9차조사 기준으로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공·사적 연금에 대해 모두 미가입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하위 40%인 1, 2분위 소득계층에서는 공·사적연금 모두 미가입한 경우가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저소득층의 연금사각지대 문제가 우려될 수 있다고 하겠다.

〈표 9〉 소득계층별 공·사적 연금 가입 현황(9차조사 기준)

(단위: 가구, %)

공사적 연금 가입여부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모두 가입	1 (0.1)	24 (2.9)	48 (6.7)	91 (11.7)	170 (21.9)
공적연금만 가입	128 (16.4)	311 (37.4)	388 (53.8)	413 (53.2)	361 (46.4)
사적연금만 가입	15 (1.9)	17 (2.0)	24 (3.3)	44 (5.7)	44 (5.7)
모두 미가입	636 (81.5)	479 (57.6)	261 (36.2)	228 (29.4)	203 (26.1)
전체	780 (100.0)	831 (100.0)	721 (100.0)	776 (100.0)	778 (100.0)

주: ( ) 안은 비율

〈표 10〉에서는 소득계층별 총급여와 공·사적 연금보험료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표 10〉을 살펴보면, 9차 조사자료를 기준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전반적으로 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적연금 보험료의 경우 3, 4분위에서 2분위보다 그 수준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연금 가입의 임의성과 관련된다고 하겠다. 다만, 전반적인 추이는 매년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연금급여수준 및 연금보험료 수준도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0〉 연도별 소득계층별 총급여 및 공·사적 연금보험료

(단위: 천원, 가구)

소득계층		6차조사(2003년)			7차조사(2004년)			8차조사(2005년)			9차조사(2006년)		
		연간 총급여 액	공적 연금 보험료	사적 연금 보험료	연간 총급여 액	공적 연금 보험료	사적 연금 보험료	연간 총급여 액	공적 연금 보험료	사적 연금 보험료	연간 총급여 액	공적 연금 보험료	사적 연금 보험료
1분 위	평균	7,681	396	143	7,662	389	144	7,616	351	124	7,792	403	167
	빈도	815	134	26	798	122	25	818	107	20	781	129	17
2분 위	평균	평균	17,596	722	136	17,350	718	147	17,217	722	165	18,997	809
	빈도	222	빈도	750	294	74	796	319	65	801	304	49	832
3분 위	평균	평균	25,700	1,071	163	25,596	1,127	166	26,012	1,105	160	28,158	1,164
	빈도	185	빈도	868	465	107	894	466	105	813	446	82	721
4분 위	평균	36,379	1,402	187	36,337	1,484	175	36,951	1,604	201	39,304	1,599	188
	빈도	702	432	129	702	435	132	811	542	130	777	505	136
5분 위	평균	66,323	2,348	252	65,656	2,552	316	67,399	2,611	300	71,566	2,821	310
	빈도	772	492	184	796	540	206	803	571	213	778	531	214

### 3. 분석결과

#### 가. 연금과세효과

이 장에서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제도적 특성을 고려한 가정과 모형설정을 통해 연금과세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기초통계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가구유형별 및 소득계층별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첫째, 가구유형별 연금보험료 공제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공·사적연금에 모두 가입한 경우, 공적연금에만 가입한 경우, 사적연금에만 가입한 경우의 3가지 형태로 비교분석하고 있다. 〈표 11〉은 공·사적연금에 모두 가입한 경우를 분석한 것으로, 공·사적연금에 모두 미가입한 비교집단과 비교하였을 때의 세금 절감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총연금보험료의 면세효과). 즉, 공·사적연금 모두에 가입하

고 있는 가구의 평균과세액(A유형)을 산출하고, 이들 가구에 대해 연금보험료를 소득공제해 주지 않을 경우의 가구 평균과세액(B유형)을 찾아 두 변수의 차이로서 연금보험료 공제효과를 산출하고 있다.

〈표 11〉 가구유형별 공·사적연금 보험료에 대한 연금과세 효과

(단위: 천원, 가구, %)

가구유형		6차조사(2003년)			7차조사(2004년)			8차조사(2005년)			9차조사(2006년)		
		A	B	면세율*	A	B	면세율*	A	B	면세율*	A	B	면세율*
홀 별 이	평균	1,792	2,061	(-13.1)	2,375	2,667	(-11.0)	2,761	3,074	(-10.2)	2,945	3,267	(-9.9)
	빈도	144	144		148	148		162	162		155	155	
맞 별 이	평균	1,175	1,416	(-17.0)	1,449	1,710	(-15.2)	1,826	2,110	(-13.4)	2,223	2,555	(-13.0)
	빈도	114	114		105	105		110	110		124	124	
전 체	평균	1,519	1,775	(-14.5)	1,991	2,270	(-12.3)	2,383	2,684	(-11.2)	2,624	2,950	(-11.1)
	빈도	258	258		253	253		271	271		279	279	

주: A = 공·사적 연금 모두 가입한 경우의 가구당 과세액

B = 공·사적 연금 모두 미가입한 것으로 가정한 경우의 가구당 과세액(이하동일)

\* 면세율 =  $(A-B)/B \times 100$  (이하동일), 면세율이 제시된 수치로 계산 시 일치하지 않는 것은 각 단위에서 반올림 한 값 때문임(이하동일).

동 기준에서의 면세효과(공제효과)는 2006년 11.1%로 추정되며, 홀별이 가구에 비해 맞별이 가구가 더욱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2003년 이후 면세효과(공제효과)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소득수준의 상승분만큼 연금보험료의 공제수준이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연간 384만원 이상에 대해서 공제받지 못하며, 사적연금 공제상한<sup>24)</sup>은 2006년 이전은

24)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00년 12월 이전 '개인연금저축' 가입자의 경우, 연금불입액의 40%(연간 72만원 한도)가 소득공제되고, 2001~2005년 '연금저축' 가입자의 경우는 연금저축 불입금액 전액(퇴직연금 소득공제와 합산하여 연간 240만원 한도)이 소득공제되며, 2006년 이후 '연금저축' 가입자는 퇴직연금 소득공제와 합산하여 300만원 한도에서 불입액의 전액이 소득공제된다.

240만원을, 2006년 이후에는 300만원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이에 따라 공제수준을 적용하였다.

〈표 12〉에서는 〈표 11〉에서와 달리 공적연금에만 가입한 경우에 대해 미가입한 것으로 가정할 경우의 면세효과(공적연금 보험료의 면세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앞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가구의 과세수준(a유형)을 산출하였으며, 동 가구의 공적연금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을 경우의 과세수준(b유형)을 찾고 이들의 차이로서 공적연금 보험료의 면세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소득공제 적용 시 면세효과(공제효과)는 2006년을 기준으로 13.3%로 나타났으며, 〈표 11〉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홀벌이 가구에 비해 맞벌이 가구의 면세효과(공제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003년 이후 그 효과는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표 12〉 가구유형별 공적연금 보험료에 대한 연금과세 효과

(단위: 천원, 가구, %)

가구유형	6차조사(2003년)			7차조사(2004년)			8차조사(2005년)			9차조사(2006년)			
	a	b	면세율*	a	b	면세율*	a	b	면세율*	a	b	면세율*	
홀벌이	평균	973	1,133	(-14.1)	1,160	1,336	(-13.2)	1,308	1,506	(-13.1)	1,444	1,655	(-12.8)
	빈도	1,177	1,177		1,260	1,260		1,310	1,310		1,237	1,237	
맞벌이	평균	1,029	1,224	(-15.9)	1,276	1,510	(-15.4)	1,414	1,660	(-14.8)	1,551	1,808	(-14.2)
	빈도	671	671		655	655		689	689		707	707	
전체	평균	994	1,166	(-14.8)	1,200	1,395	(-14.0)	1,345	1,559	(-13.7)	1,483	1,711	(-13.3)
	빈도	1,848	1,848		1,915	1,915		1,998	1,998		1,944	1,944	

주: a= 공적연금에 가입한 경우의 가구당 과세액

b= 공적연금에 미가입한 것으로 가정한 경우의 가구당 과세액(이하동일)

\* 면세율 =  $(a-b)/b \times 100$  (이하동일)

〈표 13〉에서는 사적(개인)연금에만 가입한 경우의 면세효과(공제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앞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적(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가구의 과

세수준(a'유형)을 산출하고, 동 가구의 사적연금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을 경우의 과세수준(b'유형)을 찾아 이들의 차이로서 면세효과(공제효과)를 산출하고 있다. 공적연금 보험료의 소득공제 효과와 마찬가지로 면세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수준은 2006년 기준으로 1.3%로 공적연금 보험료의 소득공제 효과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홀별이 가구에 비해 맞별이 가구의 면세효과(공제효과)가 다소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2003년 이후 그 효과는 감소하는 경향을 띠지만 뚜렷하지는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sup>25)</sup>.

〈표 13〉 가구유형별 사적연금(개인연금) 보험료에 대한 연금과세 효과

(단위: 천원, 가구, %)

가구유형		6차조사(2003년)			7차조사(2004년)			8차조사(2005년)			9차조사(2006년)		
		a'	b'	면세율*	a'	b'	면세율*	a'	b'	면세율*	a'	b'	면세율*
홀 별 이	평균	1,754	1,777	(-1.28)	2,380	2,410	(-1.27)	2,728	2,764	(-1.33)	2,798	2,830	(-1.15)
	빈도	341	341		355	355		323	323		300	300	
맞 별 이	평균	1,432	1,459	(-1.87)	1,228	1,252	(-1.90)	2,227	2,261	(-1.48)	2,005	2,038	(-1.65)
	빈도	192	192		190	190		179	179		182	182	
전 체	평균	1,638	1,662	(-1.46)	1,978	2,006	(-1.41)	2,550	2,585	(-1.384)	2,498	2,531	(-1.30)
	빈도	533	533		545	545		502	502		482	482	

주: a' = 사적(개인)연금에 가입한 경우의 가구당 과세액,

b' = 사적(개인)연금에 미가입한 것으로 가정한 경우의 가구당 과세액(이하동일)

\* 면세율 =  $(a' - b') / b' \times 100$  (이하동일)

25) 사적연금의 면세효과(공제효과)가 공적연금에 비해 적게 나타나는 것은 공적연금 보험료가 조사소득에 법정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되었지만, 사적연금 보험료는 조사결과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사적연금 보험료 면세효과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공·사적 연금보험료에 대한 면세효과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효과가 가구 유형과 소득계층에 상대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둘째, 소득계층별 연금과세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가구유형에서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공·사적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여부에 따라 3가지 형태로 비교·분석하고 있다. <표 14>에서는 공·사적연금에 모두 가입한 경우의 세금 절감효과에 대해 소득계층별로 제시하고 있다. 소득공제 적용 시 면세효과는 저소득계층에서 다소 크게 나타나고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과세혜택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저소득층에서 공·사적연금에 대해 모두 가입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해석에 조심스러움이 있다. 그러나 2, 3분위이상을 살펴볼 때 이러한 현상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표 14> 소득계층별 공·사적연금 보험료에 대한 연금과세 효과

(단위: 천원, 가구, %)

소득계층		6차조사(2003년)			7차조사(2004년)			8차조사(2005년)			9차조사(2006년)		
		A	B	면세율*	A	B	면세율*	A	B	면세율*	A	B	면세율*
1분위	평균	10.7	21.4	(-50.0)	100	131	(-23.9)	14.2	22.8	(-37.8)	127	198	(-36.0)
	빈도	5	5		2	2		7	7		1	1	
2분위	평균	123	160	(-23.3)	183	249	(-26.4)	189	239	(-21.2)	354	443	(-20.1)
	빈도	30	30		23	23		13	13		19	19	
3분위	평균	353	449	(-21.3)	503	649	(-22.5)	460	582	(-21.1)	632	790	(-19.9)
	빈도	48	48		47	47		39	39		40	40	
4분위	평균	1,068	1,305	(-18.2)	985	1,194	(-17.5)	1,199	1,437	(-16.6)	1,230	1,472	(-16.4)
	빈도	69	69		62	62		74	74		73	73	
5분위	평균	2,818	3,237	(-12.9)	3,484	3,898	(-10.6)	3,886	4,309	(-9.8)	4,175	4,623	(-9.7)
	빈도	106	106		119	119		138	138		146	146	

<표 15>에서는 공적연금에 가입한 경우의 세금 절감효과를 소득계층별로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의 분석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할 때, 공·사적연금 모두 가입한 경우와 유사하게 저소득층일수록 공적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의 면세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소득계층별 공적연금 보험료에 대한 연금과세 효과

(단위: 천원, 가구, %)

소득계층		6차조사(2003년)			7차조사(2004년)			8차조사(2005년)			9차조사(2006년)		
		a	b	면세율*	a	b	면세율*	a	b	면세율*	a	b	면세율*
1분 위	평균	48.5	66.4	(-27.0)	44.3	64.8	(-31.6)	32.8	49.1	(-33.3)	66.4	91.2	(-27.2)
	빈도	141	141		128	128		112	112		130	130	
2분 위	평균	178	223	(-20.3)	194	242	(-19.9)	216	268	(-19.1)	271	331	(-18.0)
	빈도	296	296		320	320		307	307		335	335	
3분 위	평균	445	547	(-18.7)	491	603	(-18.6)	506	625	(-19.0)	587	716	(-18.0)
	빈도	469	469		466	466		446	446		436	436	
4분 위	평균	856	1,032	(-17.0)	924	1,114	(-17.1)	1,060	1,272	(-16.7)	1,105	1,320	(-16.3)
	빈도	433	433		435	435		544	544		505	505	
5분 위	평균	2,429	2,792	(-13.0)	2,966	3,376	(-12.2)	3,177	3,600	(-11.8)	3,706	4,185	(-11.5)
	빈도	493	493		540	540		571	571		531	531	

〈표 16〉에서는 사적(개인)연금에 가입한 경우의 세금 절감효과를 소득계층별로 보여주고 있다. 앞의 경우들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일수록 면세효과(공제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6〉 소득계층별 사적연금(개인연금) 보험료에 대한 연금과세 효과

(단위: 천원, 가구, %)

소득계층		6차조사(2003년)			7차조사(2004년)			8차조사(2005년)			9차조사(2006년)		
		a'	b'	면세율*	a'	b'	면세율*	a'	b'	면세율*	a'	b'	면세율*
1분 위	평균	11.5	13.2	(-12.5)	60.7	65.4	(-7.1)	47.4	51.5	(-8.0)	24.2	27.2	(-11.2)
	빈도	26	26		25	25		20	20		17	17	
2분 위	평균	127	133	(-4.4)	143	148	(-3.7)	187	196	(-4.7)	314	323	(-3.0)
	빈도	74	74		65	65		49	49		41	41	
3분 위	평균	448	461	(-2.9)	486	500	(-2.9)	481	492	(-2.4)	619	636	(-2.7)
	빈도	469	469		466	466		446	446		436	436	
4분 위	평균	1,089	1,111	(-2.0)	1,080	1,101	(-1.9)	1,276	1,302	(-2.0)	1,221	1,243	(-1.8)
	빈도	129	129		132	132		130	130		136	136	
5분 위	평균	3,672	3,717	(-1.2)	4,258	4,310	(-1.2)	5,005	5,066	(-1.2)	4,576	4,628	(-1.1)
	빈도	184	184		205	205		213	213		214	214	

## 나. 사회후생 변화 효과

앞에서는 연금보험료 공제에 따른 면세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면세효과(공제효과)는 개인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사회전체의 소득분배상태를 변화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증가된 가처분소득과 변화된 소득분배상태로 표현되는 사회후생수준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사회후생수준 변화 분석은 9차조사(2006년)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표 17〉은 공·사적 연금보험료를 내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 보험료를 소득공제할 경우와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로 구분하여 평균소득과 지니계수를 산출하고 있다. 평균소득은 총급여액에서 과세액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으로 계산하였다. 지니계수는 각 집단별로 가처분소득을 이용해 산출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가구유형에 관계없이 보험료 공제로 인한 가처분소득은 증가하고, 지니계수도 미세하게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나 소득과 불평등도는 서로 상충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연금보험료 납부자 중에서 납부액이 높은 고소득자가 소득공제의 혜택을 많이 보기 때문이다. 한편, 소득보장측면에서는 공제효과가 크게 나타났지만, 재분배 측면에서는 다소 역진적인 결과를 보였다. 그러므로 이 두 관계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사회후생함수를 이용해 연금과세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표 17〉 가구유형별 평균소득 및 지니계수

(단위: 천원, 지니계수)

구분 <sup>1)</sup>		평균 가처분 소득 <sup>2)</sup>	지니계수
전체	보험료 공제	36,282	0.294
	보험료 비공제*	36,037	0.293
홀벌이	보험료 공제	31,755	0.291
	보험료 비공제*	31,533	0.290
맞벌이	보험료 공제	44,008	0.265
	보험료 비공제*	43,723	0.263

주: 1) 공·사적연금 보험료를 내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만 분석(\*보험료 비공제는 현재 공제 대상 보험료를 내고 있을 지라도 이를 공제해 주지 않을 경우로 가정(이하동일))

2) 가처분소득=총급여액-과세액(연간기준), 이하동일

〈표 18〉에서는 〈표 17〉에서의 가처분소득과 지니계수를 활용하여 가구유형별로 사회후생 개선 효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beta$ 값에 따라 사회후생 개선 효과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beta=0$ 인 경우에는 사회후생함수가 지니계수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험료 공제 시 보다 비공제 시의 후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사회후생 수준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beta$ 가 커질수록 증가하는 소득수준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사회후생은 개선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beta$ 값, 즉 그 사회의 가치관에 따라 사회후생을 개선 혹은 악화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beta$ 값을 1/2로 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사회후생을 0.2%정도 개선하는 효과가 있고, 미세하게나마 맞벌이에 비해 홑벌이 집단의 사회후생이 더욱 개선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18〉 가구유형별 사회후생 개선 효과

(단위: 사회후생치<sup>1)</sup>, %)

구분	$\beta=0$			$\beta=1/2$			$\beta=1$		
	공제 (A)	비공제 (B)	후생개선 효과*	공제 (A)	비공제 (B)	후생개선 효과*	공제 (A)	비공제 (B)	후생개선 효과*
전체	0.70596	0.70677	-0.114	4,093.05	4,084.60	0.207	25,614,162	25,469,912	0.566
홑벌이	0.70883	0.70955	-0.102	4,109.65	4,100.68	0.219	25,718,067	25,570,174	0.578
맞벌이	0.73550	0.73683	-0.181	4,264.26	4,258.31	0.140	26,685,602	26,553,060	0.499

주: 1) 사회후생치는 후생함수식(앞의 식 7)을 활용하여 산출된 값으로 절대수치는 의미가 없으며, 비교집단간 상대적 크기에 의미가 있음(이하동일).

2)  $\beta$ 는 후생함수식(앞의 식 7)에서 베타값( $0 < \beta < 1$ ) (이하동일)

3) 후생개선 효과 =  $(A-B)/B * 100$  (이하동일), 후생개선효과가 제시된 수치로 계산시 일치하지 않는 것은 각 단위에서 반올림 한 값 때문임(이하동일).

다음으로 소득계층별 후생개선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자. 〈표 19〉는 공·사적 연금보험료를 내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 보험료를 소득공제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소득계층별로 평균소득과 지니계수를 산출하고 있다. 분석방법은 앞선 가구유형에서의 분석방법과 동일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보험료 공제로 인한 가처분소득은 증가하나, 지니계수 값의 변화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즉, 1분위에서는 공제 후 지니계수값이 증가(역진적)하나, 2분위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고, 3분위이상 고소득층에서는 공제 후 지니계수값이 다소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표 19〉 소득계층별 평균소득 및 지니계수

(단위: 천원)

구분		평균 가처분 소득	지니계수
1분위	보험료 공제	8,817	0.211
	보험료 비공제	8,794	0.210
2분위	보험료 공제	18,996	0.086
	보험료 비공제	18,934	0.086
3분위	보험료 공제	27,608	0.053
	보험료 비공제	27,462	0.054
4분위	보험료 공제	37,766	0.059
	보험료 비공제	37,533	0.060
5분위	보험료 공제	62,876	0.157
	보험료 비공제	62,333	0.158

〈표 20〉에서는 〈표 19〉의 가처분소득과 지니계수를 활용하여 소득계층별 사회후생 개선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beta$ 값에 따라 사회후생 개선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은 가구유형에서의 설명과 동일하다. 동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후생함수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회후생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beta$ 값을 1로 가정할 경우에도 5분위 계층의 후생개선 효과는 0.756% 정도로 매우 낮아 후생측면의 개선여부를 논하기에는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표 20〉 소득계층별 사회후생 개선 효과

(단위: 사회후생치, %)

구분	$\beta=0$			$\beta=1/2$			$\beta=1$		
	공제 (A)	비공제 (B)	후생개 선 효과	공제 (A)	비공제 (B)	후생개 선 효과	공제 (A)	비공제 (B)	후생개 선 효과
1분위	0.78928	0.78965	-0.046	4,576.1	4,563.6	0.275	28,637,118	28,456,574	0.634
2분위	0.91357	0.91365	-0.009	5,296.7	5,280.2	0.312	33,146,505	32,925,257	0.672
3분위	0.94670	0.94639	0.033	5,488.8	5,469.4	0.354	34,348,640	34,105,114	0.714
4분위	0.94054	0.94000	0.058	5,453.1	5,432.5	0.379	34,125,297	33,874,813	0.739
5분위	0.84293	0.84231	0.074	4,887.2	4,867.9	0.396	30,583,732	30,354,243	0.756

#### Ⅳ.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에서는 현행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제도가 지니는 제도적 특성과 현행 과세체계를 고려하여 가구유형별, 소득계층별로 구분하여 연금보험료 납부시점에서의 면세효과(공제효과)와 사회후생 수준의 변화 효과를 살펴보았다.

주요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납부시점에서의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으로 모든 가구유형 및 소득계층에서 면세효과(공제효과)가 존재하였으며, 이로 인해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유형별로 볼 때 맞벌이가구의 공제효과가 홑벌이 가구 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맞벌이가구가 연금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어 공제효과도 그만큼 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보험료 공제에 따른 면세효과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신의 과세수준 대비 공제수준의 비율은 저소득층이 훨씬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이러한 보험료 공제효과는 모든 계층에서 가처분소득의 증가를 야기했고, 이러한 가처분소득 증가는 연금보험료를 많이 내는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불평등 지수인 지니계수로 살펴본 결과, 전체 대상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다소 역진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이는 현행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자신의 소득에 대해 절대치로 감액되나, 여기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누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고소득층에 적용되는 연금보험료에 대한 공제율(-소득세율)은 저소득층보다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이러한 가처분소득의 증가와 역진적인 분배변화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사회후생함수로서 Sen(1973)의 사회후생함수를 일반화한  $SW = \mu^\beta (1-G)$ 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beta$ 값의 결정여부(사회의 가치관)에 따라 보험료 공제의 사회후생 개선여부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eta$ 값을 1/2, 1로 가정할 경우 모든 집단에서 사회후생을 미약하게나마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반적인 개선효과는 소득개선과 지니계수 역진성 사이의 상충관계로 인해 1%수준 미만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후생 수준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 중 연금 보험료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은퇴 후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부분은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연금보험료에 대한 공제효과를 가구유형과 소득계층별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가구유형별로 살펴보면 보험료 공제에 따른 면세효과는 홀별이 가구가 맞벌이 가구보다 작았지만, 형평성까지 고려한 사회후생 측면에서는 개선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처분소득 변화효과 보다 형평성 수준의 변화가 가구유형의 후생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소득계층별로는 고소득층에서의 사회후생 개선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면세율 효과(공제율 효과)에 있어서는 저소득층이 다소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면세액 자체가 적고 가처분소득에도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상이 분배측면을 왜곡함으로써 전체 사회후생 개선은 오히려 고소득층에게 더 크게 돌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연금 보험료의 소득공제가 가입자, 즉 상대적으로 부유한 자에 대해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 연금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현행 체제보다, 소득수준별로 달리 적용하는 방안도 사회후생 측면에서 합리적일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동 제안은 은퇴시점의 연

금과세 및 조세정책의 변화 등은 배제된 채, 연금보험료 측면에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한 것이므로 향후 종합적 측면에서의 후생변화 효과까지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 참 고 문 헌

- 강성호·김문길, 「공적(국민)연금제도의 사회후생효과 분석-사회후생합수 활용에 의한 접근-」, 노동연구원 제7차 노동패널학술대회, 2006.
- 공무원연금관리공단홈페이지(<http://www.gepco.or.kr>).
-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제9장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2007.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www.npc.or.kr>).
- 김원섭·강성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개인연금 활성화정책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제32집, 2008.
- 나성린·문춘걸, 「선진국의 연금과세제도 비교분석」, 『경제연구』, 제21권, 단일호,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2000.
- 류건식,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의 비교분석」, 보험개발원 2004.
- 설광언·최경수·윤희숙·유한욱·김태중·송준혁·조윤영, 「경제사회 여건변화에 대응한 사회정책방향」, 연구보고서 2006-03, KDI, 2006.
- 이순재·김현수, 「개인연금의 현황과 개선방향」, 고령시대의 연금시스템 구축-2009년도 한국사회보장학회 춘계정기학술대회, 한국사회보장학회, 2009, pp.25~54.
- 임병인, 「소득세의 형평성 및 사회후생」,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재정경제부, 「2007 조세개요」, 2007.
- 전승훈·임병인·강성호, 「개인연금 가입결정 및 가입상태 변화 분석」, 『보험개발연구』, 제17권, 제1호, 2006, pp.137~167.
- 전영준, 「2000년 연금과세 개편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재정포럼』, 2001.
- 전영준·한도숙, 「연금 과세체계 개편의 경제적 효과분석」, 연구보고서00-4, 한국조세연구원, 2000.
- 정요섭, 「개인연금에 대한 소득공제의 수익률효과 분석」, 『보험개발연구』, 제17권 제2호, 보험개발원, 2006.
- \_\_\_\_\_, 「신·구개인연금보험에 대한 금리·세제효과 비교」, 『리스크관리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리스크관리학회, 2003.
- 정운오·박찬웅, 「개정 세법상의 연금과세제도에 대한 경제적 효과분석」, 『회계저널』, 제10권 2호, 한국회계학회, 2001.
- [http://pension.fss.or.kr/kor/psn/intro/intro7.jsp?pageUrl=7\\_3\\_1](http://pension.fss.or.kr/kor/psn/intro/intro7.jsp?pageUrl=7_3_1)
- [http://www.fss.or.kr/kor/jsk/retirement/retirement\\_10.jsp?menu=jsk021100](http://www.fss.or.kr/kor/jsk/retirement/retirement_10.jsp?menu=jsk021100)



<http://www.nts.go.kr/>

Mukhopadhyaya, P., "A Generalized Social Welfare Function, Its Decomposition and Application", *Department of Economics Working Paper, No. 0119*,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2001.

Sheshinski. E., "Relation Between a Social Welfare Function and the Gini Index of Income Inequality", *Journal of Economic Theory*, Vol. 4, 1972, pp.98~100.

## Abstract

An income deduction for public or private pension contribution increases disposable income. On the other hand, it also makes an income redistribution worse. An empirical analysis shows how social welfare can be changed before and after the income deduction for pension contribution using social welfare function ( $SW = \mu^\beta(1-G)$ ).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s, the level of social welfare improvement depends on the value of the parameter( $\beta$ ). For example, social welfare is more improved with  $\beta=1/2$  or  $\beta=1$  than  $\beta=0$ . In other words, positive effects on the improvement in income from the income deduction are slightly larger than the negative effects on equality (represented by  $(1-G)$ ). That is, the total improvement of social-welfare was less than one percent due to the tradeoff. The social welfare improved more in one-income family than dual-income family. It also improved as the income increased.

Consequently, it implies that different level of the income deduction based on income brackets may be necessary in that higher income group can be relatively better off from the income deduction.

※ Key Words: Gini-coefficient, income deduction, Social-welfare function

【부 록】 기술통계 분석(가구일반사항)

〈부표 1〉 가구주 성별

(단위: 명, %)

구분	KLIPS 6차자료		KLIPS 7차자료		KLIPS 8차자료		KLIPS 9차자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남자	4,056	81.7	3,845	82.1	3,849	80.8	3,940	80
여자	907	18.3	839	17.9	914	19.2	983	20
전체	4,963	100.0	4,684	100.0	4,763	100.0	4,923	100

〈부표 2〉 가구주 혼인상태

(단위: 명, %)

구분	KLIPS 6차자료		KLIPS 7차자료		KLIPS 8차자료		KLIPS 9차자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미혼이다	319	6.4	289	6.2	315	6.6	346	7
기혼이며 배우자가 있다	3,727	75.1	3,532	75.4	3,511	73.7	3,572	73
별거중이다	67	1.3	63	1.3	68	1.4	67	1
이혼하였다	237	4.8	220	4.7	246	5.2	289	6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였다	613	12.4	580	12.4	623	13.1	649	13.2
전체	4,963	100.0	4,684	100.0	4,763	100.0	4,923	100.0

〈부표 3〉 가구주 건강상태

(단위: 명, %)

구분	KLIPS 6차자료		KLIPS 7차자료		KLIPS 8차자료		KLIPS 9차자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아주 건강하다	157	3.2	145	3.1	157	3.3	212	4.3
건강한 편이다	2,167	43.7	2,056	43.9	1,975	41.5	2,215	45.0
보통이다	1,625	32.7	1,523	32.5	1,656	34.8	1,510	30.7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847	17.1	802	17.1	825	17.3	830	16.9
건강이 아주 안 좋다	167	3.4	158	3.4	150	3.1	156	3.2
전체	4,963	100.0	4,684	100.0	4,763	100.0	4,923	100.0

〈부표 4〉 가구주 학력

(단위: 명, %)

구분	KLIPS 6차자료		KLIPS 7차자료		KLIPS 8차자료		KLIPS 9차자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무학	275	5.5	263	5.6	265	5.6	266	5.4
초등학교	697	14.1	664	14.2	666	14.0	673	13.7
중학교	696	14.0	673	14.4	669	14.0	678	13.8
고등학교	1,781	35.9	1,671	35.7	1,687	35.4	1,730	35.1
2년제 대학, 전문대학	382	7.7	356	7.6	395	8.3	416	8.5
4년제 대학	936	18.9	880	18.8	900	18.9	959	19.5
대학원 석사	158	3.2	144	3.1	148	3.1	163	3.3
대학원 박사	35	0.7	31	0.7	32	0.7	37	0.8
전체	4,960	100.0	4,682	100.0	4,762	100.0	4,922	100.0

〈부표 5〉 가구주 취업여부

(단위: 명, %)

구분	KLIPS 6차자료		KLIPS 7차자료		KLIPS 8차자료		KLIPS 9차자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취업자	3,651	73.6	3,453	73.7	3,475	73.0	3,571	72.5
미취업자	1,312	26.4	1,231	26.3	1,288	27.0	1,352	27.5
전체	4,963	100.0	4,684	100.0	4,763	100.0	4,923	100.0

〈부표 6〉 가구주 일자리형태(임금/비임금)

(단위: 명, %)

구분	KLIPS 6차자료		KLIPS 7차자료		KLIPS 8차자료		KLIPS 9차자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임금근로자	2,366	64.8	2,231	64.6	2,200	63.3	2,335	65.4
비임금근로자	1,285	35.2	1,222	35.4	1,275	36.7	1,236	34.6
전체	3,651	100.0	3,453	100.0	3,475	100.0	3,571	100.0

〈부표 7〉 가구 일반사항

(단위: 세, 명, 천원, 명)

구분	KLIPS 6차자료			KLIPS 7차자료			KLIPS 8차자료			KLIPS 9차자료		
	평균	빈도	S.D	평균	빈도	S.D	평균	빈도	S.D	평균	빈도	S.D
가구주 연령(세)	49.3	4,963	14.2	49.6	4,684	14.2	50.0	4,763	14.4	50.4	4,923	14.5
총가구원 수(명)	3.2	4,963	1.3	3.2	4,684	1.3	3.1	4,763	1.3	3.1	4,522	1.3
임금 및 비임금소득(천원)	205	3,502	206	206	3,314	209	209	3,376	300	225	3,482	543
가구 총지출(천원)	1,899	4,941	1,247	1,903	4,668	1,246	1,961	4,723	1,281	2,061	4,521	1,359